

검 토 보 고 서

충청북도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건 설 소 방 위 원 회
수석전문위원 김경형

충청북도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발의자 : 임순묵 의원 등 7인

2. 발의 및 회부일자

가. 발의일자 : 2017년 4월 11일

나. 회부일자 : 2017년 4월 14일

3. 제안이유

상위법령인 「지진·화산재해대책법」의 개정에 따른 용어 등을 변경하고, 원인조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가. 상위법령에 개정에 따른 용어 등 정비

(안 제1조, 안 제2조, 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)

- “지진피해” → “지진재해”
- 「지진재해대책법」 → 「지진·화산재해대책법」
- “피해규모” → “재해규모”

나. 원인조사단의 임무 신설(안 제6조)

다. 정부조직 개편으로 인한 지진피해 원인조사 결과보고서 제출사항
변경(안 제9조)

라. 타 시도 지원요청 시 지원 사항 변경(안 제10조)

5. 검토내용

가. 조례개정의 필요성

- 상위법령인 「지진재해대책법」의 개정에 따라 제명과 용어 등을 정비하고, 원인조사단의 임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.

나.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

- 「지진·화산재해대책법」 제20조에 따라 시·도 지역대책본부장은 관할 구역의 지진재해원인의 조사·분석 및 평가를 위하여 지역지진재해원인조사단을 구성·운영할 수 있고, 이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.
- 입법예고('17. 4. 4.~'17. 4. 9.)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으며,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은 없음.

다.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

-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, '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'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.

6. 검토의견

「충청북도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,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, 원인조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